

【문 1】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이중경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하[문20]까지 같음)

- ① 이중경매신청은 매각대금 납부 시까지 가능하나 배당요구 종기 후에 한 이중경매의 압류채권자는 선행사건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한 매각대금의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
- ② 선행절차에서 채무자가 주소변경신고를 하였다면 선행절차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소변경신고는 후행절차에서도 당연히 효력이 있으므로 후행절차에서 변경된 주소가 아닌 종전의 주소로 한 매각(결정)기일 통지는 부적법하다.
- ③ 선행사건이 있음에도 후행사건에 의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하지만 그 절차의 진행을 저지함이 없이 후행사건이 그대로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그 대금까지 완납되었다면 매수인은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④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102조 소정의 최저매각가격과 비교해야 할 우선채권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는 그 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자 중 가장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자의 권리이다.

【문 2】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집행문부여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재판에 대하여는 집행에 관한 이의나 즉시항고로 다룰 수 없다.
- ② 제3자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방법이 적법한 경우에는 물론, 그 집행이 다른 이유로 집행질차상 위법이기 때문에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거나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제기할 수 있다.
- ③ 집행문부여의 소는 채권자가 조건성취사실 또는 승계사실에 관한 증명을 할 수 없는 때에 제기할 수 있으며, 수통·재도부여를 신청하였다가 거절당한 경우에도 본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의 존재를 다투기 위하여 또는 이미 실시된 개개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제기할 수 없다.

【문 3】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확정된 지급명령에 있어서는 확정 전에 생긴 사유에 의해서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청구이의의 소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는 가집행신고부 판결, 가압류·가처분명령, 소송비용확정결정, 대체집행의 수권결정, 부동산 인도명령 등이 있고, 강제집행이 배당절차에 들어간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③ 이의의 대상인 집행권원의 내용은 금전채권이든 비금전채권이든 상관없지만,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에 대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④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사유는 설혹 채무자가 항소를 제기하여 주장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항소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된 후에 청구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문 4】 자동차 강제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한 때에는 법원은 집행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 ② 집행관은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채권자가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차를 채무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 ③ 강제경매신청 전에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강제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자동차를 그 소속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④ 집행법원은 영업상의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의 신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을 허가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나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다.

【문 5】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83조 제3항에 의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배당요구종기 후에 경매를 신청한 자는 침해행위방지를 위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압류채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침해행위방지를 위한 조치 중 집행관보관명령은 그 결정이 상대방에게 도달되기 전에도 집행문 없이 집행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일을 경과한 때에는 집행할 수 없다.
- ③ 침해행위방지를 위한 조치로 금지명령이나 작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경매개시결정 후부터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이다.
- ④ 금지명령·작위명령은 대체집행이나 간접강제의 규정에 따라 집행되며,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며 집행기간은 대금을 납부할 때까지이다.

【문 6】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재매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매수인이 된 후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매각을 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인과 차순위매수인 중에서 먼저 대금을 지급한 사람이 매각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한다.
- ② 공유물지분경매에서 공유자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공유자의 대금미납으로 재매각절차가 진행된 경우 그 절차에서 위 공유자에 대한 매각(결정)기일 통지가 누락되었다면 이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가 된다.
- ③ 재매각명령 후 최초의 재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 그 밖의 매각조건에 대하여는 전의 매수인이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호명받은 매각기일에 정하여졌던 매각조건이 그대로 적용된다.
- ④ 전 매수인이 재매각절차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대금지급은 현실적으로 금전을 지급하여야 하고 민사집행법 제143조에서 인정하는 채무인수 또는 차액지급의 방식에 의한 특별지급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문 7】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절차에서 우선채권의 범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입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입차권등기를 한 입차인이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그 보증금은 우선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② 최선순위 전세권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그 전세금은 우선채권에 포함된다.
- ③ 근저당권자가 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집행권원상의 채권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동일한 채권이 아니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선순위채권액의 계산에 포함시켜 잉여 여부를 판단한다.
- ④ 공동저당권의 목적인 여러 개의 부동산이 동시에 일괄매각되는 경우에는 그 피담보채권 전액이 한 번만 우선채권의 범위에 산입된다.

【문 8】 매각물건명세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매각물건명세서를 비치하지 않았거나 또는 비치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가 되며 나아가 직권에 의한 매각불허가사유가 된다.
- ② 매각물건명세서의 정정·변경이 그 사본 비치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정정·변경된 내용이 매수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면 당초 통지·공고된 매각기일을 진행하되 집행관은 매각기일에 매각실시 전 그 정정·변경된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③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의 사본은 일괄 편철하여 매각기일 1주 전까지 사건별·기일별로 구분한 후 집행과 사무실 등에 비치하여 매수희망자가 손쉽게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하나 현황조사보고서에 첨부한 주민등록 등·초본은 비치하지 아니한다.
- ④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면서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최선순위 전세권이 매수인에게 인수된다는 취지의 기재를 누락했다면 이는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문 9】 가압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채무자는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 또는 가압류집행 자체의 취소 등을 구할 이익이 없게 된다.
- ② 제3채무자가 가압류 집행된 금전채권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출금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
- ③ 금전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되므로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된 자기의 채권에 기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거나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④ 가압류등기 후 채무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그 후에는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은 채무자 소유였던 부동산을 압류할 수 없고 그에 관한 배당요구도 할 수 없다.

【문10】 배당이의의 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채권자가 원고일 경우에는 이의신청으로 상대방 채권자의 채권을 부인한 액수를 표준으로 소송물가액을 산정한다.
- ② 배당이의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사유를 진술할 필요가 없지만, 일단 사유를 진술한 이상 배당이의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뒷받침하는 공격방법은 배당기일에 이의한 사유에 국한된다.
- ③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고 그 뒤에 배당을 받을 후순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금채권의 경우에는 이러한 배당요구 없이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④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기일로부터 1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 사실 증명서류와 아울러 그 소에 기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문11】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부동산 경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매신청 당시 이미 담보권의 부존재·무효, 피담보채권의 불발생·소멸 등의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면 비록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② 피담보채권은 경매신청서에 기재하여 소명하면 족하고 그 존재를 증명해야 경매개시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③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는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는 것 외에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후순위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은 매각대금 완납 시에 확정된다.

【문12】 경매신청의 취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한 때에는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그 후의 취하는 허용되지 않고 집행법원은 배당절차를 속행하면 된다.
- ② 임의경매에서 경매개시 후 담보물권이 대위변제 등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법원에 신고되기 전이라도 대위변제자가 경매신청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종전의 경매신청인이 한 취하는 효력이 없다.
- ③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그때까지 소요된 절차비용은 경매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하나 이중경매에서 먼저 개시된 사건의 신청인이 지출한 절차비용 중 뒤에 개시된 사건에 그대로 이용된 절차에 관한 비용은 공익비용으로서 취하된 선행사건의 신청인이 매각대금에서 우선적으로 상환받을 수 있다.
- ④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이 있으면 그때까지 기본계약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채권으로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만 임의경매가 개시된 뒤에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피담보채권 확정의 효력은 소멸한다.

【문13】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및 그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자동채권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발생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② 피압류채권의 일부를 특정하여 채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한 경우에는 그 특정부분에 한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며 그 후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있고 그 압류된 금액의 합계가 피압류채권의 총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의 효력이 피압류채권 전액으로 확장되지 않는다.
- ③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경정한 결정은 그 경정결정본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④ 압류명령은 직권으로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자에게도 압류명령을 송달하여야 한다.

【문14】 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험계약에 관한 해약환급금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여 그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지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집행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③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을 얻은 후 다시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얻은 때에는 추심명령은 당연히 소멸하므로 이때에는 별도로 추심권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
- ④ 채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가 있는 경우에 제3채무자는 위명령에 선행하는 채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서로 경합된다는 점을 이유로 그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문15】 채권압류의 경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장래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부분 피압류채권은 이미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그 이후 동일한 장래채권에 관하여 다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압류의 경합은 생기지 않는다.
- ② 압류의 경합으로 압류효력이 확장된 후 압류의 취소나 취하 등에 의하여 압류의 경합이 해소된 경우에 나머지 경합채권자는 별도의 압류를 하여야 목적채권 전부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채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 있다.
- ④ 선행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을 마쳤거나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한 경우에는 압류된 채권은 소멸하므로 그 후 압류명령이 발령되어도 압류의 경합이 생기지 않는다.

【문16】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채권압류의 효력은 압류의 시점에 존재하는 목적채권 전부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집행채권의 범위로 한정된다.
- ② 제1압류명령송달과 제2압류명령송달의 사이에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을 처분하거나 제3채무자가 변제한 경우 제1압류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으나 제2압류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으나 제2압류채권자에게는 유효한 처분 또는 변제가 된다.
- ③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을 한 대여금채권은 전부명령에 의한 전부대상이 될 수 없다.
- ④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그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지의 여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문17】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있는 후에 그 채무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임차한 자는 가압류사건의 본안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그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법인이 소속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기며,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도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인정된다.
- ③ 주택임차인은 간접점유의 방법으로도 주택을 인도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간접점유자인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쳐야 대항력이 있다.
- ④ 임차인 甲이 주택을 인도받은 날 바로 주민등록을 마쳤고, 같은 날 乙이 동일 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면 甲은 乙이 신청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문18】 채무불이행자명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명부 등재의 소극적 요건인 '쉽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의 존재에 관하여는 채무자가 이를 증명한다.
- ②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말소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상의 통상항고로 불복할 수는 없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만을 할 수 있다.
- ③ 채권자가 등재말소에 동의하였다는 사유로 채무자가 등재말소신청을 하면 법원은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④ 명부에 등재한 후 등재결정이 취소되거나 등재신청이 취하된 때 또는 등재결정이 확정된 후 채권자가 등재의 말소를 신청한 때에는 명부를 비치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그 명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문19】 보전처분의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전처분의 취소절차는 일단 유효하게 발령된 보전처분을 보전처분 신청절차와는 별개의 절차로 실효시키는 제도이다.
- ② 가압류의 목적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결정을 취소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
- ③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고 소제기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그 뒤에 본안의 소가 취하된 때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④ 가압류채무자는 해방금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구할 수는 있으나,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가압류명령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문20】 다음 중 집행비용이 아닌 것으로만 묶인 것은?

- ① 유체동산의 이중압류에서 후행압류에 소요된 비용,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에 든 비용
- ②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신청비용, 집행문부여신청비용
- ③ 보정명령의 송달료, 배당요구종기 이후의 채권계산서 제출비용
- ④ 매각기일 출석비용,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한 경우의 출석일당 및 여비